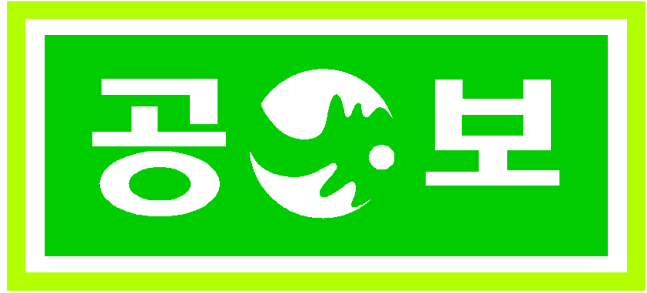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98 호 2013. 2. 4(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20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2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08호[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1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회 관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2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89-15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2.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이물동 890-3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89-15(이물동)	2013-02-04	기존마을 자연부락명칭인 황토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58 1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4-3(진장동)	2013-02-04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58 12-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4-1(진장동)	2013-02-04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98-1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2길 12(영포동)	2013-02-04	신진일대가 삼포개발 당시 새장터(소금파는장)로 사용하여 새장터로 도로명 부여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00-1, 800-2, 801	울산광역시 북구 신장골길 8(천곡동)	2013-02-04	기존 자연마을인 신장골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96-7, 395-15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6-2(연암동)	2013-02-04	이지역의 옛지명이므로 현재도 두부곡마을이 존재하여 도로명을 부여	2004-01-05	
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64-5	울산광역시 북구 신장골길 19-11(천곡동)	2013-02-04	기존 자연마을인 신장골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9-1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73-1(연암동)	2013-02-04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9-08-2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2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방어진순환도로 1401	2013. 2. 4.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2.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13-108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대표자 (성 명)	주민참여과장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연암동)
소하천명		이화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1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3. 2. 8 ~ 영구		
	목적 및 사유	방범용 CCTV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새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의 공인을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2조제2항 삭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 ⇒ (개정) 제2조제2항을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 나. 전화번호 : 052-241-7203, 팩스번호 : 052-241-72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생략)	① (생략)
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